미국의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노·사·정의책임고찰

1. 법령 제정시 주요 쟁점사항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이 이루어진 197()년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업장 안전보건규제 제정이 요구되고 있었다.비록 몇몇 주 나 연방정부차원에서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법률 이 부분적으로 있긴 했으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 는못했다.

60년대 후반 미국은 시민권 여성권 환경 문제와 베 트남 전쟁 등 국내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혼라의 시 기였다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심각성 이 증가하고 있었다. 산업재해가 십년 동안 20% 증가 하였으며,한해 14000명의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죽어 갔다. 400.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작업관련성 사고와 질환으로 죽었고,거의 5.000만명 이상이 작업장에서 산재장해로고통받고있었다.

이로써 1970년에 산안법이 제정되었다. 산업안전 보건법은 일명 William Steiger 법이라고 불리운다. 이는 상원의원 William이 기초한 상원법안과 하원의 원 Steiger가 기초한 법안이 절충을 거친 뒤 통과되었 음을 의미한다.이 당시 미국의 노동조합측에서는 필 요한 기준의 제정과 집행권한을 노동부에 주도록 하 는 상원법안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행정부에서는 기 준의 제정과 사법적 처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 창설을 주장한 하원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두 개의 법 아은 입법 목적 상으로는 커다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법을 누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차이 점만이었었다

가.사업주의 선언적 의무조항

'사업주의무' 에 관한 상원 법안은 "근로자에게 안

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지된 위험(Recognized Hazards)이 없는고용환경을제공" 하는 것으로, 위반에 관하여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이었다. 반면, 하원 법안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기 쉬운 어떠한 유해요인(Anv Hazards)이 없는 고용확경을 제공하도록" 사업주의 무를 부과하고 이 조항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 는것이었다.

상 · 하원합동위원회에서는 "고도로 복잡한 산업 환경에서 사업주에게 모호한 명령을 지키도록 요구 하는것은불공평하다"는기본취지하에,사망또는심 각한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기 쉬운 "인지된 위험 (Recognized Hazards)"에 대하여 사업주 의무를 적 용하고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충 안을마련하였다.이것이 오늘날의 법 5/a)(1)이다.

나.급박한위험상황

초기 상원 법안은 긴박한 위험상황에 대하여 "위험 의성격과긴박함(법원의 명령을구하기에는시간이부 족한"을 고려하여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결정권을 노 동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었고, 하원의 법안은 (XHA가 모든 기박한 위험상황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었다.상·하원합동위원회위 원들은 위험상황시의 권한이 개인인 감독자에게 주어 지는경우남용의우려가있으므로최종적으로하원법 아을 체택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Whirlpool Corp. 판결에서 심각한 신체위험이 존재하는 합당한 상황에서, 사업주로부 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작업을 거부할 근로자 권리

를 변호한 바 있다.

다.기준의 실행가능성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규정 되어야 한다. 실행가능성은 기술적 · 경제적 실행가 능성을 포함한다. 경제적 실행가능성이란 사업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적 측면에서 필요한 방 법을수행할수있는가하는문제이다.

라.기준제 · 개정절차

OHA 기준제정에 대하여 상원에는 '비공식적' 인 과정을 제안하였고. 반대로 하원 대표들은 '공식적' 인 기준제정과 좀더 엄격하고 실질적인 증거 검증을 제안하였다.최종적으로상 · 하원합동위원회위원들 은 비공식인 기준제정을 체택하되 실질적인 과학적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시행하는 절충안 을체택하였다.

OSHA의 기준제정은 '공식적', '비공식적' 기준제 정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일명 'Hybrid Rulemaking'으로 불리어진다.OHSA기준제정은 다 음의 세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① 초기 기준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첫 2년 동안 OSHA의 기준제정절차없이 마련한 '잠정적인 기준' 이라고도한다 개시기준은더 최신의 기준으로 결국은 대치되겠지만 최신의 기준으로 대치되어 효력이 없어 질때까지는영구적기준이다.

② (SHA 의 기준제정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준 이어야하다

③ 비상시 임시규정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현 존하는경우마련되며.6개월동안효력을발휘한다.

법 6a)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기준제정 절차 없이 "국가합의기준"과 "확정된연방기준"을 채택할수있 다. 국가여론기준이란 다양한 관점들이 고려되고. 관 계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동의'를 얻어낸 '국가적 으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법 3(9)에 정의되어 있다.

'확정된 연방기준' 은 연방청에 의해 기존에 채택되어 진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1971년 5월 29일,OHA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적 여론에 따르는 미국립표준 기 구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ANSI)와 미역방방재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NFPA)의기준을 그대로원 용하여 OHA 기준을 법시행과 동시에 일괄 규정하였 다.

한편.OHA의기준제정과정의특성으로 "실행가능 한최소수준정책"을들수있다.예를들면,개정된석 면의 허용폭로농도(1975년 10월 9일)는,기존 석면기 준의 허용폭로농도(0.5f/cc)와 허용최고한도(5f/cc)에 의하여 다양한 암과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새로 운 증거"들과 발암성 물질에 대한 "실행가능한 최소 수준"의 허용농도를 정하는 OHA의 정책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의 기준제정에 있어서 그 외의 원칙은 기준으로 인하여 "비용이얼마나소요되는가"라기보다는기준이 "상당한유해에대한효과성"을가지고있느냐에더역점 을두고있다.다시 말하면 예방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근 로자에 대한 유해성이 서로 충돌한 경우 상당한 유해성 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필요한 기준제정(규제)을 한 다는의미이다.

또한 초기 기준 마련시 미국립표준기구(ANS)와 미 연방방재협회(NFPA)의기준을근거로하였듯이.명백 한 과학적인 근거를 밝히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기보 다.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기준을 도입하고 있 다.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기준제정은 기술적 수 준에 있어서 매우강력한 규제라 할수 있다.

마 연방정부승인 주정부 프로그램

직업안전보건법 18(c)(2)에 따르면, 계획 승인과 관 련된 주권은 주사이의 통상에 의해 유통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한된다. 안전보건 입법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이미 몇몇 주(州)에서는효과적인직업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었다. OHA는 주의 프로그램이 OHA의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 주의기준을 승인해주었다.

1972년 후반 남부 케롤라이나 몬타나, 오레곤에서 (NHA의 승인을 최초로 받았다. 1983년에는 연방기준 보다 훨신더 엄격한 기준인 캘리포니이주의 에틸렌디 브로마이드기준을 승인하였다. 승인되기 전에 연방법 원에서 켈리포니아주가 에틸렌 디브로마이드기준을 집행하는것을 금지하였다.

바.사법적 검토

초기 상원 법안에서는 공표된 기준에 대한 항소를 콜롬비아 자치구 고등법원에만 전달하고 공표된지 30일 이내에 재검토가 이루져야 하며 '배제적' 수정 의 입장이었다. 반면, 하원법안은 모든 고등법원에 항 소가 전달되는 것을 허락했고, 배제적이라는 용어는 포함하지 않았다.상ㆍ하원 합동위원회 위원들은 더 설득력있는 상원조항을 채택하였다.

2. 정부 · 사업주 · 근로자의 책임

가.정부

① 기준제정

법에 의한 OSHARulemaking 단계는 다음과 같다.자 체의견이나 관련단체의 건의(NOH 권고 등)에 따라 기준제정작업에 시작된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안을 마련하고 30일간 예고후에 필요한 경우서 면 논평을 받거나 공청회를 개최한다.최종 법안은 공 청회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혹은 공청회를 개최하 지 않은 경우 논평기간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결정 되어야한다.

《법체계》

- ○직업안전보건법(OSHAct): 상·하원을 통과하여 대 통령이 서명 · 공포
- ○미연방규칙 29장(OSHA standards 29CFR): OSHA에 서 정하는 법의 하위규정
- -part 1910 일반산업 (General Industry)
- -part 1915 조선업 (Shipyard)
- -part 1917 해양터미널(Marine terminals)
- -part 1918 항만작업 (Longshoring)
- -part 1926 건설업 (Construction)
- -part 1928 농업 (Agriculture)

《보건관련 기준》

1910.1000 - 공기오염 (Air contaminants)

1910.1001 - 석면(Asbestos)

1910.1002-콜타르피치 휘발물질(Coal tar pitch volatiles)

1910.1003 - 13개 발암물질(4-니트로바이페닐 등)[(13 Carcinogens(4-Nitrobiphenyl, etc.)]

1910.1004 - α 나프틸아민 (Alpha-Naphthylamine)

1910.1005-[유보]([Reserved])

1910.1006 - 메틸클로로메틸에테스

(Methyl chloromethyl ether)

1월611607 - 3,3' -디클로로벤지다인과 염

(STAX-Dialogophonicaline-englished) 가도을 수행하 .1910.1008-빌스클로로메틸에테르 가위하여 감독 우셨순위를 정하고 있다. 감독의 최우 선영화요양사장의트일과학교실제소상위유발 우려가 인원답니한 취취되었는데 아이나 두 번째는 사상자 (SAcetylaminofluggene) 경우와 다섯 번째, 고위험 1015-4-대메일아비노왕조벤젠 산업에대하계횡돫감돐염섫번째,사후점검을위한 ZHSH(E10]67.) 세리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19104017车沿部削呈(Vinyl chloride)

1910 1018 - 무기비소 (Inorganical senic) (1) 7 등 과 신문제상 1910 1020 - 근로자 폭로 ·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 ③사업장 숙절cess to employee exposure and medical

records)

1910,1025 - 남(Leed) 1916:182위에보늄(SHA) 다시행되는이유,목적 감(50) [1128] 관행(Back) 한 시 근로자 대표 근로자 인 터취⁰총생의 화의 등에 대하네 월 당한 약 연변한 학학 입 1910, 1030 - 혈액원성 병원체 (Boodborne pathoern) 장영10, 1053 - 현관천 (Cotton dust) 부분에 대해 자업주와 는위하면서현장에서 중작 근로자들에게 자문을 하기 도 한다. 카프마아 개보바라 이 비밀을 폭로해서 는 에 되 045 등 배화 등 함 내 옆 회 (A) 택과 비용 유포한 자 에 대왕이 1048 - 폭른알데히드(Formaldehyde) 과함(1000구, 제국환수) 라고 자연장 등회의 후노·사 대표대여개 후은따로 ※[2회원류] 레최한다. 종결회 의위시162학생통회클루라이 투위하여 교육이에 주의 그에서는 그 말이 게 해 가입된 *** 중 일 시합니다 - 1910 1096 - 이웃화 방사선(Innzing radiation) - 토론하고 의방사항을 지점 () 되었다(에 근거하여 - 1910 1200 - 유해정보제공(Hazard Communication) 사회쥬위항쇼권리관 빤찬벌권료에 태현날양말음소 화장을 받은 Retation 이 전투 markings palas of anti-는절차에 대하철명 어떠한 소환에도 따라야 하는 / 1910.1450 - 설현실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직업적 폭 업주의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다 감독훈에 급로 자의 권리에 때해여!?하네를~빠~하거나 근로자의 직 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별도로 종결회의를 개 최할수있다.

○SHA 감독은 사업장의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만약.○HA 내부의 적정한 절차를 얻지 않고사전에 사업주에게 알렸을 경우에는 \$1000까지 의 벌금 및 6개월의 감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 주가 OHA의 감독을 거부 ·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영 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조치가 가능하다. 다음의 경 우에는 24시간이내 사업주에게 사전예고를 하기도 하다.

- ①가능한한빠른개선이필요한급박한위험상황
- ②감독이 정규시간이후에 시행되어야 하거나특별

한준비가필요한경우

- ③(SHA가노·사대표자등의 참석을 미리 알려야 하는경우
- ④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독수행을 위해 사전 예고가 필요하다고 OHA 지역사무소장의 결정 이있는경우

산업안전보건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사고의 직접적 위반은 되지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손상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경미한 위반(Other-than-Serious Violation)으로 분류하고 위반 1건당 최고 \$7.000까지 벌금을 책정할 수 있으나,사업주의 노력, 과거위반경력,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 경감에 따른 벌금액이 \$100 이하인 경우는 면제된다.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손상이 발생될 명백한 가능성을 사업주가 알고 위반한 경우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으로 분류하고 위반 1건당 최고 \$7,000∼최 하 \$1,500까지 벌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경감될 수 있 다.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알고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 위반(Willful Violation)으로분류하고 위반 1건당최고 \$7000~최하 \$5000까지 벌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의 적 위반으로 근로자 1인을 사망케 하여 유죄로 확정되 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25만(법인 \$50만)과 6개월 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기타 사업주가 반복적으로 법 을 위반하는 경우(Repeated Violation)위반 1건당 최 고 \$70,000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시정기 가을 초과한 경우(Failure to Abate) 초과 1일당 \$7000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자발적 참여프로그램(VPPs), 기술상담지원 (Consultation Assistant)

OHA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 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무료 상담서비스를 확 대하였고, 포괄적인 상담방문서비스에 참여하는 고 용주는 1년 동안 감독에서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도하였다. 1982년에 (SHA는 모범적인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장을 각성시키기 위해 자발 적 참여프로그램(VPP)을 개발하였다. VPP에 대한 경 험을 바탕으로 OHA는 1989년 자발적 안전보건프로 그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VPP는 현재 KOSHA 2000 등 악전보건경영시스템과 유사하다.

나.사업주의무

직업안전보건법적용을받는근로자는다음의의무 를준수해야하다.

- (1) 인지된 위험(Recognized Hazards)이 없는 작업 환경을제공할일반적의무준수
 - ② 산업안전보건문제에대하여근로자에게주지
- ③ 직업안전보건법 하의 기준.규정.규칙에 대한 준
 - ♠작업환경평가
 - ⑤ 잠재적 유해요인 최소화 혹은 제거
- (b) 적절한 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도구와 장비의 적 절한제공
 - (7) 근로자에게 잠재적 유해요인 경고
 - ❸작업순서확립및개정,근로자에게전달
 - ⑨필요시의학적검사제공
 - (10)OSHA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교육제공
- (11) 세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8시간 이내보고
 - (12) 작업관련성재해및질병에대한기록유지
 - (13) OSHA 200호복사본게시
 - (14) 근로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하여 사업장 게시
- (15) 근로자, 이전근로자, 근로자 대표가 OSHA 200 호기록을열람할수있도록함.
- (16) 근로자가의학기록 및 폭로기록을 열람할 수 있 도록함.
 - (17)OSHA 감독관과 협력
 - (18)(CSHA 소화장 등의 게시

- 다 근로자의무
- (1) 작업장내 OSHA Poster 읽기
- ②OSHA기준준수
- ③ 작업장내 보호구 사용·착용과 안전보건규칙· 규정준수
 - 4위험상황을감독관에게보고
- ⑤ 작업관련 재해 및 질병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즉시치료를구할것
- ⑥ 책임있는 자세로 직업안전보건법 하의 권리 실 했

3. 미국 직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구

(1) 산업안전보건청(OHA)

노동성()())산하 외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쾌적 한작업환경개선으로직업병예방

- ①본부조직 6부28과
- ②지방조직(본부지역관리과소속):10개청.85개 지방사무소
- ③인원 :총 6,000명(본부 약 400명, 지방 감독관 약 2,000명)
- ②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OH)

법 제20조에 의하여 OHA의 연구기능을 수행하며 보건사회부 내에 설치 사업아전보건 권고기준의 연 구개발 산업체에서의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따른 안 전보건문제 연구.연구기능 등의 수행을 위한 사업장 방문점검,연구기능의 수행을 위한 계약 등의 체결 등 을 담당 현재 본부 외에 3개의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 음.

- ①주요 업무:노동부제정기준을 돕기 위한 권고기 준의 책자발간 산업안전보건기준 개발 화학물 질독성자료집 발간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산 업안전보건전문가의교육등
- ③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OSHRO)

법제12조에따라대통령이임명한3인으로구성되 는데 임기는 6년임. 노동사무소에서 발한 위반장에 이 의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 소속 행정판사가 1차적으 로청문회등을개회하여심의하며심의위원은 1차심 의사항에대한재심기능을원칙적으로수행

4. 요약

미국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준제정 감독 등정부의 역할과사업주의 책임 등을 정함에 있어.(1) 노·사이 익단체 등의 장시간에 걸친 공공의 합의(Consensus) 를 통해서 기본개념을 정립하였다. 규제 내용도 우리 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범주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어 기술 적인 사항은 우리나라 기준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하 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 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 등 관리 부분은 제외한다. ② 근로자 보호에 대한 효과가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3)근로자 참여권 근로자 알 권리 등근로자 권리가 강조한다.(4) 성과에 근거하여 기준을 제정하거나 법을 집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장내 유해요인으로부터 근로 자 보호라는 대원칙보다는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등사회여론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철학의 부재가 아직도 우리나라 법규의 후진 성을 면치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 다.